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16. . .<br>(제 회) |      |

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 
심사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
|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기획예산과장    |
| 제출 연월일 | 2016. . . |

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칩

#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
## 1. 제안이유

강북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와 투자심사위원회의 통합운영으로 규칙의 투자심사위원회 관련규정의 삭제 등 정비가 필요하며, 이에 따른 규칙 대부분이 상위법령 규정을 단순히 옮겨 적는 규정만 남게 되어 존치 실효성이 적음.

## 2. 주요내용

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을 폐지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도첨부

1) 지방재정법 제37조의2

2)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:

1) 입법예고: 생략

-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고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임

##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

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」”을 “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과 「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」”으로 한다.

## 관련 법령

### □ 지방재정법 제37조의2(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)

-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"는 "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"로 본다.

#### 지방재정법 제32조의3(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)

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(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)과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)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### □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(위원회 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,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.

1. 법 제60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68조제2항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
2.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선정사항
3.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심사
4. 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